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	
	배포일시	2019. 8. 2(금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도시재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정우진, 사무관 유지만 ·☎ (044) 201-4903, 4907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'도시재생법') 일부개정 법률안이 '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-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,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

-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, 주택·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,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.

\* 종전에는 도시개발법·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, 이에 따라 사업지연, 절차 중복의 문제 발생

- 아울러,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, 산업단지 지정의제, 인·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.

- 다만,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,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,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.

## ②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으면, 재정·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.

\*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였음

-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다만,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『도시재생 전략계획』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\*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하였다.

\* ① 쇠퇴지역(법 제13조제4항 / 인구감소, 노후건축물 증가, 산업체수 감소)  
 ②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

## ③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

-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, 운영·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\*를 신설하였고,

\*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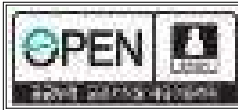
-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 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\*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으며,

\*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 
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

-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·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,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\*하였다.

\* (주요내용) ① 임대기간 10년→ 20년 확대 ②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 시설물 축조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.5%→ 1% 인하

□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